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48

발의연월일: 2024. 10. 23.

발 의 자:윤준병·소병훈·박희승

민병덕 • 박홍배 • 정동영

민형배 · 신영대 · 박민규

서영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물가 안정 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수입을 확대하면서 국내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농수축식품의 경우 생산 시간이 길고 보관이 어려워 생산량을 쉽게 조절할 수 없으므로 할당관세로 인한 생산자의 피해가 더욱 큼 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 및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불합리마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할당관세에 따른 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수산물에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및 수량,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의 전년도부과 실적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

법률 제 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 물품으로 농림 축수산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물품 및 수량,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사전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 수량, 세율, 적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할당관세) ①・② (생	제71조(할당관세) ①・② (현행과
략)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	3
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	
<u>설></u>	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부
	과하는 대상 물품으로 농림축
	수산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물품 및 수량,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사전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u>한다.</u>
<u><신 설></u>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유
	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생산
	하는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
	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
	해 물품의 관세 부과를 중지하
	거나 수량, 세율, 적용기간을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선 신설>

조정할 수 있다.
<u><u>5</u></u>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u>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u>
보고하여야 한다.